



## 경인지방병무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복지요원 복무 중 수학(복학 등)행위 유의사항 및 복학 관련 협조 요청

---

### 1. 관련근거

- 가. 병역법 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)
- 나. 병역법 제73조(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)
- 다.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4(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)
- 라. 병무청 사회복지관리과-560호(2023.2.15.)" '23년 상반기 사회복지요원 수학여부 실태조사 계획 알림"

2. 복무중인 사회복지요원은 「초.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등에 따른 학교에서의 수학하는 행위가 금지되나 관련 법령 미숙지 및 오인으로 인해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군휴학 중인 사회복지요원이 소집해제일 이전 복학 신청을 하는 경우, 복무확인서 상 연가기간(연가시작일자~ 연가 종료일자)를 확인하시어 복학 승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.

가. 원칙 : 소집해제 이후 수학 가능

나. 예외 : 남은 연가를 사용하여 소집해제일 이전 수학 가능

\*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유의사항(붙임1)

- 1)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기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
- 2) 병가, 대체휴무,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
- 3)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
- 4)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
- 5)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(5일 복무연장) 및 복학취소, 복무기관 주의 처분

붙임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및 위반자 처리 기준 1부. 끝.

경인지방병무청장



수신자 관할 대학

주무관 양진      복무관리과 계장 원미영      과장      전결 2023. 2. 27.      노상현

협조자

시행 복무관리과-2065      (2023. 2. 27.)      접수

우 16440    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, 복무관리과 (화서동)      / <http://www.mma.go.kr>

전화번호 031-240-7396      팩스번호 031-240-7350      / [yangjin13@korea.kr](mailto:yangjin13@korea.kr)      / 비공개(5,6)

공정하고 정의로운,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